

4.1.14 방화관리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6. 10.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로부터 재해를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전 교직원과 학생 및 교내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조직) ① 총장은 본 대학의 방화관리에 관한 총책임자가 되며, 본부에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관리자를 두며, 각 처와 부속, 부설기관 및 건물별로 방화 정·부 책임자를 둔다.

② 각 부서의 방화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부서의 선임과장 또는 선임계장으로 하고 각 실별로 화기책임자를 둔다.

③ 각 강의동별 방화책임자는 당해 선임학부(과)장이 되며, 부책임자는 차선임, 선임학부(과)장이 된다.

제4조(자위소방대 편성) ① 화재 및 각종 재해예방을 위하여 본 대학 교직원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본부분대, 기동분대, 화생방분대, 소화급수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를 둔다.

제5조(임무) 방화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분담한다.

① 본부 방화관리자

가.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소방계획서 작성

나. 소방훈련 및 교육

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점검, 정비 및 유지관리

라. 화기취급 및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② 건물별 방화책임자 및 부책임자

가. 사용 건물내의 화재예방 및 화기 단속확인

나. 각실 소화기 책임자를 임명하고, 소방장비 등 안전유지관리 확인

다. 부책임자는 방화책임자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소화기 책임자

가. 담당구역(실포함)내에 시설비치된 각종 소화기 및 소방장비 등의 안전유지관리

나. 각실 위험물 사용 및 화기취급에 철저를 기한다.

다. 방화관리자의 업무협조

④ 경비원

가. 야간 순찰의 경비구역내의 화재 또는 화재 위험요소를 발견시는 본부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대처한다.

제6조(자체검사 및 점검) ① 방화관리자는 본교의 소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년 2회 이상 위험물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위험물 취급자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② 위험물 취급장소 및 화기취급 장소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제15조(소방점검)에 의거 연1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소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점검에 관한 기록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② 정기교육은 연2회(합동훈련1회, 자체훈련1회)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화재 예방 상 교육 및 훈련에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4장 비상연락체계

제8조(비상연락 및 소집)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화재는 최초발견자가 육성 또는 확성기를 총동원하여 전 교직원에게 알리며, 휴일 및 야간의 화재 발생시는 본부 당직자에게 통보하며 즉시 자위소방대장에게 보고, 지시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자위소방대원과 교직원에게 소집, 통고한다.

제9조(화재신고) 화재발생을 목격한 최초 발견자는 즉각 관할 소방서에 신고와 자위 소방대장에게 화재발생시간, 화재 신고시간, 화재상황 등을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